정책연구 2013-27

어린이놀이공간 안전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연 구 진

오은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도형(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차 례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5

제2장 어린이놀이공간의 현황 분석 ····· 9

제1절 어린이놀이공간의 설치 현황 ····· 11

제2절 어린이놀이공간의 안전사고 현황 ····· 19

제3장 어린이놀이공간의 해외 안전관리제도 ····· 35

제1절 일본 ····· 37

제2절 미국 ····· 45

제3절 영국 ····· 51

제4장 어린이놀이공간의 안전관리제도 현황 ····· 59

제1절 어린이놀이공간 관련법 구성체계 ····· 61

제2절 어린이놀이기구의 인증 및 안전관리제도 ····· 62

제3절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제도 ····· 70

제4절 국내 안전관리제도의 비교 및 문제점 ····· 79

제5장 어린이놀이공간의 법령 개정방향 ····· 83

제1절 기본방향 ····· 85

제2절 법률 개정안 ····· 86

참고문헌 ····· 112

표 차 례



<표 1>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및 유기기구 관련 법률 ····· 6
<표 2> 운영형태별 현황 ····· 11
<표 3> 지역별 현황 ····· 12
<표 4> 운영형태별 현황 ····· 13
<표 5> 설치연도별 현황 ····· 13
<표 6>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사항 ····· 14
<표 7>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신고사항 ····· 14
<표 8> 용도지역별 설치 현황 ····· 15
<표 9> 주류 판매 여부 ····· 16
<표 10> 실내 및 실외 설치 현황 ····· 16
<표 11> 시설유형별 놀이기구 및 유기기구 설치 여부 ····· 17
<표 12> 시설유형별 놀이기구 및 유기기구 설치 현황 ····· 18
<표 13> 유기기구 설치 현황 ····· 18
<표 14> 연도별 유기기구 사고 현황 ····· 19
<표 15> 유기기구 종류별 사고 및 고장 현황 ····· 20
<표 16> 유기기구 사고·고장의 원인(Ⅰ) ····· 20
<표 17> 유기기구 사고·고장의 원인(Ⅱ) ····· 20
<표 18> 키즈카페 안전사고 경험자 ····· 21
<표 19> 키즈카페 안전사고 경험횟수 ····· 21
<표 20> 키즈카페 내 안전사고 발생 기구 ····· 22
<표 21> 사고 부위(다중응답) ····· 23
<표 22> 사고 유형(다중응답) ····· 23
<표 23> 사고 발생원인(다중응답) ····· 24
<표 24> 안전사고 유형 ····· 25

<표 25> 치료방법 ····· 25
<표 26> 부모 인터뷰에서 파악된 사고 원인 ····· 32
<표 27> 부모 인터뷰를 통한 키즈카페 기구 안전관리수칙 제시 · 33
<표 28> 어린이놀이기구 관련법의 제정목적 ····· 63
<표 29> 어린이놀이기구의 종류(11종) ····· 65
<표 30>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관련, 시행령 별표 6) ····· 67
<표 3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 71
<표 32>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 73
<표 33> 유원시설업의 유형 ····· 75
<표 34>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 76
<표 35>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의 준수사항 ····· 77
<표 36> 유원시설업의 준수사항 ····· 78
<표 37> 어린이놀이기구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시스템 ····· 79
<표 38> 신종 어린이놀이공간의 입지가능지역 ····· 81

그 림 차 례



<그림 1> 연구흐름도 ····· 8
<그림 2> 놀이공간으로 인한 사고 ····· 27
<그림 3>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 27
<그림 4> 키즈카페의 위생상태 ····· 29
<그림 5> NPSI 로고 ····· 45
<그림 6> CPSC 로고 및 발간 핸드북 ····· 46
<그림 7> CPSI 과정 수료식 모습 ····· 49
<그림 8> EN1176 적용법을 다룬 신문기사 ····· 51
<그림 9> API 홈페이지에 소개된 좋은 놀이터 설계 ····· 55
<그림 10> 어린이놀이공간 적용법규 ····· 62
<그림 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 절차 ·· 80
<그림 12> 「관광진흥법」의 안전관리 절차 ····· 80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과거에 비하여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어린이 양육비용에 대한 지불의사가 증가하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산업이 성장하고 있음

○ 그에 따라 최근 상업지역이나 유원지가 아닌 주거지역 등에서 어린이를 주 고객으로 하는 신종 어린이놀이공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음

- 소위 “키즈카페”는 일반적으로는 실내 놀이시설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 공간에서 부모들과 아이들이 음식·음료를 마시면서 어린이 놀이기구를 이용하여 놀면서 쉴 수 있음
- 전통적인 어린이놀이공간은 근린 지역에서의 소규모 놀이터이거나 도시 외곽의 대형 놀이시설(동물원, 유원지, 테마파크 등)이었음
- 중규모 시설의 실내 어린이놀이공간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음

○ 최근 이러한 신종 어린이놀이공간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나 부상사고 등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사례 1: 줄사다리를 타다가 매트리스 위쪽에 나무로 된 프레임에 떨어져서 대퇴부가 부러짐(KBS 소비자 고발)
- 사례 2: 키즈카페 미니기차에서 어린이가 추락하여 성형을 요하는 사고 발생(매일경제, YTN 2012. 5.20.)

- 사례 3: 장난감 자동차를 타던 어린이가 트램펄린 이용자에 밟혀 목과 척추 골절(문화일보 2012.8.23.)

○ 따라서 신종 어린이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마련이 시급한 형편임

- 키즈카페는 식품을 팔면서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등으로 업종이 사업주 자의적으로 선택되고 있음

○ 이에 안전행정부는 2013년 5월 9일에 25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제1회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미니기차·트램펄린 등 신종 유기기구와 키즈카페에 대한 안전관리를 안전행정부로 일원화하기로 하였음

2. 연구 목적

○ 본 과제는 향후 어린이놀이공간에 대한 일원화되고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는 어린이놀이공간 관련 법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 신고를 할 경우 안전관리의 대상이 안 됨

○ 이를 위하여 현재 어린이놀이공간 관련 법령을 상호 중복되거나 충돌, 또는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법률 개정안(법률 조항)을 제안하도록 함

○ 특히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어린이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는 안전행정부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안전행정부의 핵심 법안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을 중심으로 법 개정조항을 고민

- 어린이놀이시설법의 개정조항에 따라 다른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함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용어의 정의

○ 현재 어린이놀이공간, 어린이놀이시설, 유기기구 등 어린이들이 놀이에 사용되는 용어가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개념 정의 명료화가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기존 법제도에서 이용하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되, 키즈카페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추가함

- 어린이놀이기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규정된 11종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공중 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건너는 기구, 조합놀이대, 충격흡수용 표면재, 기타 놀이기구)로 전원(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어린이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는 놀이기구
- 어린이놀이시설: 상기 11종 어린이놀이기구를 사용하는 14개 장소(휴게소, 대규모 점포, 어린이집, 아파트단지, 병원 등)
- 유기기구: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로 전원(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놀이기구
- 유원시설업: 유기기구가 설치되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을 취득하는 업종
- 키즈카페: 신종 어린이놀이공간으로서 유기기구와 어린이놀이기구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부모와 아이를 위한 음식료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트램펄린, 정글짐, 미니기차, 볼풀장 등 여러 유기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키즈카페 체인으로 어린왕자, 뽀로로테마파크, 점프노리, 네버랜드(모래놀이 중심), 안데르센 등이 있으며 소규모 개인 자영업 형태로 운영되기도 함

2. 연구 내용

☐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의 현황 파악

○ 키즈카페 등에 대한 개념, 설치 현황, 그리고 최근의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

○ 2013년 안전행정부 조사 결과, 전국 16개 시도에 어린이 놀이공간은 총 977개소가 운영 중임

- 그중 키즈카페(키즈카페, 실내놀이터, 키즈테마파크 등)가 590개소(60.4%)이며, 그다음으로 트램펄린장 309개소(31.6%), 유원시설 23개소(2.4%), 기타 55개소(5.6%) 등이 운영 중임

☐ 어린이 놀이시설 및 유기기구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 현행 유기기구와 관련된 법률은 (1) 기구의 안전인증, (2) 유기기구가 설치될 놀이공간에 대한 인허가관리, 그리고 (3) 유기기구의 설치 및 안전검사 등에 대한 검사로 구분

<표 1>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및 유기기구 관련 법률

부처	관계법령	주요내용	관리대상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	- 그네, 미끄럼틀, 조합놀이대 등 ※ 유기기구는 제외
안전행정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 공원, 아파트, 식품접객업소, 놀이제공영업소 등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 유기기구 안전관리 - 유원시설업 인허가	- 유원시설업의 시설 ※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용도 건축물에 설치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 관리 - 식품접객업 인허가	- 음식점
환경부	환경보건법	- 어린이 활동공간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기생충 등 환경안전관리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집·유치원의 교실

☐ 해외 안전관리시스템 분석

○ 미국, 일본, 영국 등 외국에서 어린이놀이기구 및 유기기구 관련 제도 현황을 분석

☐ 안전관리 강화방안 모색

○ 유기기구의 안전강화 방안을 모색
- 안전성 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를 어린이놀이기구에 포함시켜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일부 기준을 제시)
- 보험, 안전관리자 등도 포함하여 고민
안전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제안
-「어린이놀이시설법」,「관광진흥법」 등을 위주로 법률 개정안을 고민하되,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시하지 않음

3. 연구 방법

☐ 문헌 검토

○ 유기기구,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개념 및 실태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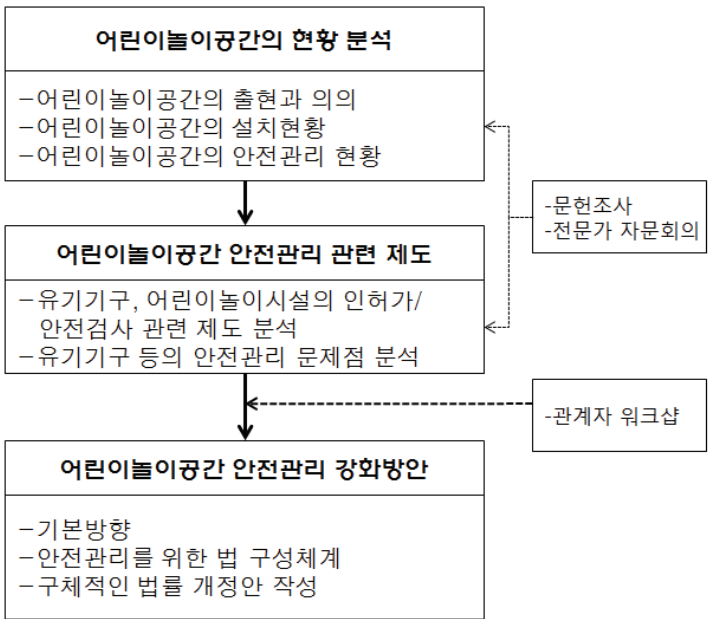
○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 조사

☐ 전문가 및 관계자 워크샵

○ 안전관리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중앙부처 관계자 간담회 참석

<그림 1> 연구흐름도


어린이놀이공간의 현황 분석
-어린이놀이공간의 출현과 의의
-어린이놀이공간의 설치현황
-어린이놀이공간의 안전관리 현황
어린이놀이공간 안전관리 관련 제도
-유기기구, 어린이놀이시설의 인허가/ 안전검사 관련 제도 분석
-유기기구 등의 안전관리 문제점 분석
어린이놀이공간 안전관리 강화방안
-기본방향
-안전관리를 위한 법 구성체계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 작성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자 워크샵

제2장
어린이놀이공간의 현황 분석

제1절 어린이놀이공간의 설치 현황
제2절 어린이안전사고의 안전사고 현황

제 2 장 어린이놀이공간의 현황 분석

제1절 어린이놀이공간의 설치 현황

☐ 시설 유형별 현황

○ 총 977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키즈카페가 590개소(60.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트램펄린장 309개소(31.6%), 유원시설 23개소(2.4%), 기타 55개소(5.6%)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표 2> 운영형태별 현황

구분		개소	비율(%)
키즈카페	키즈카페	521	53.3
	실내놀이터	42	4.3
	키즈테마파크	27	2.8
트램펄린장		309	31.6
유원시설		23	2.4
기타		55	5.6
합계		977	100.0

자료 : 안전행정부, 2013, 내부자료

☐ 지역별 현황

○ 총 977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기도 270개소(27.6%), 서울 110개소(11.3%), 경남 86개소(8.8%), 충남 66개소(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설치 수가 지역인구에 비례하는 경향을 대체로 따르고 있지는 않음

- 인천, 대전, 충북, 충남 등은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 수가 많이 입지한 것으로 판단됨

<표 3> 지역별 현황

구분	개소	비율(%)
서울	110	11.3
부산	45	4.6
대구	33	3.4
인천	50	5.1
광주	23	2.4
대전	65	6.7
울산	42	4.3
경기	270	27.6
강원	30	3.1
충북	48	4.9
충남	66	6.8
전북	35	3.6
전남	24	2.5
경북	41	4.2
경남	86	8.8
제주	5	0.5
세종	4	0.4
합계	977	100.0

자료 : 안전행정부, 2013, 내부자료

☐ 운영형태별 현황

○ 총 977개소 중 642개소(65.7%)는 개인시설이며, 335개소(34.3%)는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고 있음

○ 프랜차이즈는 상호, 특허상표, 기술 등을 보유한 업자가 개인, 소매업자 등과 계약을 함으로써 상표의 사용권, 기구, 인테리어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임

<표 4> 운영형태별 현황

구분	개소	비율(%)
개인	642	65.7
프랜차이즈	335	34.3
합계	977	100.0

자료 : 안전행정부, 2013, 내부자료

☐ 설치연도별 현황

○ 시설 수는 2006년 이후 해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3개년도의 급증이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보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27일에 시행된 점을 감안, 대부분의 시설이 법 시행 이후 개설된 것으로 판단됨

<표 5> 설치연도별 현황

구분	개소	비율(%)
2006년 이전	69	7.1
2006년	14	1.4
2007년	25	2.6
2008년	31	3.2
2009년	55	5.6
2010년	81	8.3
2011년	167	17.1
2012년	311	31.8
2013년	224	22.9
합계	977	100.0

자료 : 안전행정부, 2013, 내부자료

☐ 인허가 사항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사항

- 일반음식점 및 서비스 관련업 283개소(29.0%), 휴게음식점 143개소(14.6%)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곳은 총 426개소임

<표 6>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사항

구분	개소	비율(%)
일반음식점	283	29.0
휴게음식점	143	14.6
기타	551	56.4
합계	977	100.0

자료 : 안전행정부, 2013, 내부자료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인허가 및 신고

- 유기기구가 설치된 총 907개소 중에서 일반유원시설이 18개소(2.0%), 기타유원시설이 30개소(3.3%), 종합유원시설은 5개소(0.6%)로 854개소(94.2%)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표 7>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신고사항

구분	개소	비율(%)
기타유원시설업	30	3.3
일반유원시설업	18	2.0
종합유원시설업	5	0.6
미신고	854	94.2
합계	907	100.0

자료 : 안전행정부, 2013, 내부자료

☐ 용도지역별 설치 현황

○ 총 977개소 중 상업지역이 484개소(4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주거지역에도 421개소(43.1%)가 설치되어 상당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그다음으로 녹지지역이 22개소(2.3%), 공업지역이 21개소(2.1%)를 나타내며,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단지, 유원지 등에는 각각 6개소(0.6%), 2개소(0.2%), 2개소(0.2%)로 미미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표 8> 용도지역별 설치 현황

구분	개소	비율(%)
주거지역	421	43.1
상업지역	484	49.5
공업지역	21	2.1
관리지역	14	1.4
녹지지역	22	2.3
자연환경보전지역	1	0.1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6	0.6
관광단지	2	0.2
유원지	2	0.2
기타	4	0.4
합계	977	100.0

자료 : 안전행정부, 2013, 내부자료

☐ 주류 판매 현황

○ 총 977개소 중 주류를 판매하는 곳은 187개소로 19.1%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 기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20개소 시설 중 18개소가 음식점의 시설을 보이고 있기 때문

○ 키즈카페는 521개소 중에서 153개소가 주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29.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다음 높은 비중을 보이는 시설은 트램펄린장, 유원시설, 키즈테마파크 등으로 각각 19.4%, 17.4%, 14.8%의 점유율을 나타냄

<표 9> 주류 판매 여부

구분		전체 (A)	판매 (B)	점유율 (B/A, %)
키즈카페	키즈카페	521	153	29.4
	실내놀이터	42	0	0
	키즈테마파크	27	4	14.8
트램펄린장		309	6	19.4
유원시설		23	4	17.4
기타		55	20	36.4
합계		977	187	19.1

자료 : 안전행정부, 2013, 내부자료

❑ 실내 및 실외 설치 현황

○ 총 977개소 중 실내 시설이 854개소(87.4%)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실외 시설은 121개소(12.4%)에 불과

○ 실내 및 실외 시설은 2개소(0.2%)로 매우 미미한 분포를 나타냄

<표 10> 실내 및 실외 설치 현황

구분	개소	비율(%)
실내	854	87.4
실내 및 실외	2	0.2
실외	121	12.4
합계	977	100.0

자료 : 안전행정부, 2013, 내부자료

☐ 시설유형별 놀이기구 및 유기기구 설치 현황

○ 총 977개소 중 놀이기구만 설치된 곳이 65개소, 유기기구만 설치된 곳이 364개소, 놀이기구와 유기기구 모두 설치된 곳이 543개소, 그리고 모두 미설치된 곳은 5개소 등으로 나타남

○ 총 977개소 중 유기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80개소이며, 이를 제외한 907개소가 유기기구 설치 장소로 파악됨

<표 11> 시설유형별 놀이기구 및 유기기구 설치 여부

구분		놀이기구만 설치	유기기구만 설치	모두설치	미설치	계
키즈카페	키즈카페	54	39	423	5	521
	실내놀이터	7	4	31	0	42
	키즈테마파크	0	5	22	0	27
트램펄린장		0	261	48	0	309
유원시설		0	12	11	0	23
기타		4	43	8	0	55
합계		65	364	543	5	977

자료 : 안전행정부, 2013, 내부자료

☐ 시설유형별 놀이기구 및 유기기구 설치 현황

○ 총 977개소 중 놀이기구 및 유기기구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고정형이 933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그다음으로 이동형이 35개소, 고정 및 이동형은 9개소로 미미한 분포를 나타냄

<표 12> 시설유형별 놀이기구 및 유기기구 설치 현황

구분		고정	고정 및 이동	이동	계
키즈카페	키즈카페	503	8	10	521
	실내놀이터	41	0	1	42
	키즈테마파크	25	0	2	27
트램펄린장		298	0	11	309
유원시설		18	0	5	23
기타		48	1	6	55
합계		933	9	35	977

자료 : 안전행정부, 2013, 내부자료

❑ 유기기구 설치 현황

○ 총 977개소 중 유기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80개소를 제외한 907개소에 총 4080개(평균 4.5개)의 유기기구가 설치됨

○ 유기기구는 트램펄린, 기타고정형, 미니자동차, 미니기차 등의 순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표 13> 유기기구 설치 현황

구분			개수	비율(%)
검사비대상	주행형	미니자동차	393	9.6
		미니기차	297	7.3
		배터리카	116	2.8
		기타	85	2.1
	고정형	회전목마	207	5.1
		기타고정형	419	10.3
	관람형		38	0.9
	놀이형	트램펄린	1495	36.6
		에어바운스	208	5.1
		기타놀이형	673	16.5
검사대상			149	3.7
합계			4080	100.0

자료 : 안전행정부, 2013, 내부자료

제2절 어린이놀이공간의 안전사고 현황

1. 어린이 안전사고 통계

1) 유원시설 안전사고 현황

○ 연도별 유기기구 사고 및 고장 현황

- 지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유기기구 사고 건수는 총 45건, 사상자 132명, 사망자 21명, 경상자 109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표 14> 연도별 유기기구 사고 현황

구분	사고(고장) 건수	사고(고장) 발생 현황		
		사상자	사망자	경상자
1990	1	1	1	-
1991	1	1	-	1
1992	1	1	1	-
1993	3	13	1	12
1994	-	-	-	-
1995	1	1	-	1
1996	2	4	2	2
1997	6	5	3	2
1998	2	1	1	-
1999	5	33	3	30
2000	3	9	1	8
2001	2	4	-	4
2002	2	6	-	6
2003	6	29	1	28
2004	3	11	-	11
2005	-	-	-	-
2006	4	5	1	2
2007	2	6	6	-
2008	1	2	-	2
계	45	132	21	109

자료 : 문화관광부(2008)

○ 유기기구 종류별 사고(고장) 현황

- 유기기구 사고 및 고장 총 45건 중 고정형이 29건(64.4%)로 가장 많고 주행형 14건(31.1%), 관람형 2(4.4%)의 순으로 나타남

<표 15> 유기기구 종류별 사고 및 고장 현황

구분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놀이형	계
사고 및 고장	14(31.1)	29(64.4)	2(4.4)	-(-)	45(100.0)

자료 : 문화관광부(2008)

○ 사고(고장) 원인별 현황

- 유기기구 사고 및 고장의 원인은 인적인 불안전한 행동 26건(57.8%), 시설의 불안전한 환경 18건(40.0%), 천재지변 1건(2.2%)으로 분류됨

<표 16> 유기기구 사고·고장의 원인(Ⅰ)

구분	불안전한 행동 (인적인 면)	불안전한 환경 (시설적인 면)	천재지변	계
사고 및 고장	26(57.8)	18(40.0)	1(2.2)	45(100.0)

자료 : 문화관광부(2008)

○ 관리적 원인별 현황

- 점검,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 20건(44.4%), 운영규정 미준수 22건(48.9%), 기타 3건(6.7%)으로 분류됨

<표 17> 유기기구 사고·고장의 원인(Ⅱ)

구분	운영기준 미준수	점검, 정비 불량	계
사고 및 고장	22(48.9)	20(44.4)	45(100.0)

자료 : 문화관광부(2008)

2) 키즈카페 안전사고 현황

○ 여기에서는 한국생활안전연합이 2012년 11월 키즈카페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 232명을 대상으로 키즈카페 내 안전사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52명에게서 총 114건이 조사된 것을 요약 정리하였음

○ 사고 경험자의 경우 평균 2.23회의 사고를 경험하였으며, 최대 8회까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함

<표 18> 키즈카페 안전사고 경험자

구분	인원수	비율
사고 경험 있음	52	22.4%
사고 경험 없음	180	77.6%
합계	232	100.0%

자료 : 한국생활안전연합(2012)

<표 19> 키즈카페 안전사고 경험횟수

구분	인원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키즈카페 사고횟수	52	1	8	2.23	1.30

자료 : 한국생활안전연합(2012)

○ 사고 기구의 경우 트램펄린 21건(18.4%), 회전놀이기구 14건(12.3%), 조합놀이대와 볼풀장이 각각 13건(11.4%), 에어바운스 12건(10.5%) 순으로 나타남

<표 20> 키즈카페 내 안전사고 발생 기구

구분	사고 건수	비율
트램펄린(방방이)	21	18.4%
회전놀이기구	14	12.3%
조합놀이대	13	11.4%
볼풀장	13	11.4%
(미니)에어바운스	12	10.5%
식당	9	7.9%
미끄럼틀	8	7.0%
꼬마기차	4	3.5%
정글짐	4	3.5%
헬스기구	4	3.5%
공중놀이기구(타잔)	3	2.6%
건너는 기구	2	1.8%
오르는 기구	2	1.8%
장난감	1	0.9%
고정식 전동 탈것	1	0.9%
배터리카	1	0.9%
회전목마	1	0.9%
게임시설	1	0.9%
합계	114	100.0%

자료 : 한국생활안전연합(2012)

○ 사고 부위의 경우 얼굴 31건(25.6%), 머리 25건(20.7%), 팔 17건(14.0%), 다리 15건(12.4%) 순으로 나타남

<표 21> 사고 부위(다중응답)

구분	사고 건수	비율
얼굴	31	25.6%
머리	25	20.7%
팔	17	14.0%
다리	15	12.4%
손가락	8	6.6%
손	6	5.0%
배	4	3.3%
발	4	3.3%
치아	4	3.3%
등허리	2	1.7%
가슴	2	1.7%
기타	3	2.5%
합계	121	100.0%

자료 : 한국생활안전연합(2012)

○ 사고 유형의 경우 부딪힘 44건(37.9%), 떨어짐 27건(23.3%), 넘어짐 19건(17.1%), 끼임 11건(9.5%) 순으로 나타남

<표 22> 사고 유형(다중응답)

구분	빈도	비율
부딪힘	44	37.9%
떨어짐	27	23.3%
넘어짐	19	16.4%
끼임	11	9.5%
피부발진 또는 부음	6	5.2%
찔림	4	3.4%
베임	2	1.7%
기타	3	2.6%
합계	116	100.0%

자료 : 한국생활안전연합(2012)

○ 사고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다른 아이의 위험한 행동 44건(34.9%), 키즈카페 관리자의 부족 또는 부재 29건(23.0%) 등 주로 이용자 및 관리자의 부주의 등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 사고 발생원인(다중응답)

구분	빈도	비율
다른 아이의 위험한 행동 때문에	44	34.9%
키즈카페 관리자의 부족 또는 부재	29	23.0%
아이 본인의 위험한 행동, 실수로 인해	24	19.0%
놀이터가 좁아서	12	9.5%
나이와 몸에 맞지 않는 놀이기구 때문에	6	4.8%
놀이기구가 낡고 망가져서	2	1.6%
지저분하고 위험한 물건이 많아서	1	0.8%
기타	8	6.3%
합계	126	100.0%

자료 : 한국생활안전연합(2012)

○ 사고의 정도를 살펴보면, 멍이 듦이 30건(29.7%), 살이 긁힘 28건(27.7%) 등의 경상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뼈·치아 등이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중상 이상의 손상사례도 11건(11.0%)이 발생함

<표 24> 안전사고 유형

구분	빈도	비율
멍이 듦	30	29.7%
살이 긁힘	28	27.7%
혹이 남	16	15.8%
살이 베임	7	6.9%
삠	7	6.9%
뼈가 부러짐	4	4.0%
치아 부러짐	4	4.0%
뼈에 금이 감	3	3.0%
기타	41	40.6%
합계	140	100.0%

자료 : 한국생활안전연합(2012)

○ 치료방법의 경우 집에 간단히 조치하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76명(66.7%)으로 대부분을 차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한 경우도 38명(33.3%)으로 나타남

<표 25> 치료방법

구분		빈도	비율
치료	집에서 치료	37	32.5%
	병원에서 치료	21	18.4%
	약국에서 치료	17	14.9%
별도 치료하지 않음		39	34.2%
합계		114	100.0%

자료 : 한국생활안전연합(2012)

2.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

1) 언론 보도 사례

☐ 키즈카페 내 어두운 조명으로 인한 사고

○ 일시 및 장소: 2013년 3월, 전북 전주시 내 키즈카페

○ 사고 경위: 실내에서 만화영화 관람 도중에 영화관람실에 조명이 없어서 계단에서 추락

○ 사고 부위: 얼굴 상해(입술에 3바늘 꿰맴)

○ 사고 처리: 키즈카페가 자유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보상받기 힘듦

☐ 키즈카페 내 놀이공간으로 인한 사고

○ 일시: 2012년 1월

○ 사고 경위: 키즈카페 내 줄사다리를 타던 어린이가 떨어지면서 매트리스 위쪽에 나무로 된 프레임에 떨어짐

○ 사고 부위: 대퇴부(전치 10주)

○ 사고 처리: 사고가 난 해당 업체는 줄사다리를 바로 해체하였으나 보상과 관련하여 본사 측은 부모님의 관리 소홀만을 주장함

<그림 2> 놀이공간으로 인한 사고



출처 : KBS 소비자 고발(2012년 1월),
http://blog.naver.com/inchrist99?Redirect=Log&logNo=80151553018

☐ 키즈카페 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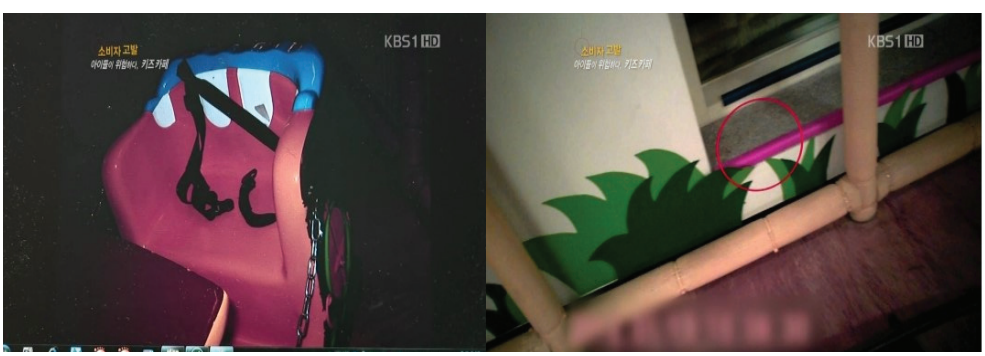
○ 일시: 2012년 1월

○ 사고 경위: 어린이 두 명이 키즈카페 내 1인용 기차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용하였고, 기차가 회전하면서 한 아이가 떨어짐

○ 사고 부위: 콧등이 찢어짐

○ 사고 처리: 아이가 다친 모서리 부분에 안전장치를 설치함(사진)

<그림 3>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출처 : KBS 소비자 고발(2012년 1월),
http://blog.naver.com/inchrist99?Redirect=Log&logNo=80151553018

□ 키즈카페 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2)

○ 일시 및 장소: 2012년 5월, 서울시 노원구 키즈카페

○ 사고 경위: 키즈카페 내 꼬마 기차에서 아이가 추락함

○ 사고 부위: 얼굴과 머리부상(24바늘 꿰맴)

○ 사고 처리: 키즈카페는 누구나 신고만 하면 개업할 수 있는 신고제업종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여 보상에 어려움이 있음

□ 키즈카페 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3)

○ 일시: 2012년 8월

○ 사고 경위: 장난감 자동차를 타던 어린이가 트램펄린 밑을 지나가다가 그 위에서 뛰어놀던 아이에게 밟혀 목과 척추에 골절상을 입음

○ 사고 부위: 목, 척추 골절

○ 사고 처리: 키즈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있어 설립자격에 제한이 없고, 특별한 안전 규정도 없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데 반해 관리 및 보상이 어려움

□ 키즈카페의 위생상태 문제

○ 일시: 2012년 1월

○ 사고 경위: 키즈카페 놀이터의 청결하지 않은 환경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급성폐렴 등에 걸림

○ 사고 부위: 급성폐렴 등

○ 사고 처리: 미화직원이 있어 매일 청소를 하지만 한계가 있음

○ 문제점: 16곳의 키즈카페의 시료를 수거하여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키즈카페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양의 일반세균 및 식중독균이 검출되었고, 이러한 세균은 여러 질병을 야기할 수 있음

<그림 4> 키즈카페의 위생상태



출처 : KBS 소비자 고발(2012년 1월),
http://blog.naver.com/inchrist99?Redirect=Log&lingo=80151553018

☐ 대형 테마파크의 안전관리 문제

○ 일시: 2012년 9월, 서울시 내 테마파크

○ 사고 경위: 테마마크 내 조형물에서 떨어져 아이가 팔꿈치 골절상을 입음

○ 사고 부위: 팔꿈치 골절

○ 사고 처리: 보상 이후 문제원인을 보완하는 작업은 없음

○ 문제점: 대형 테마파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미흡(자체적 안전점검, 지자체 보고의무 없음)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 키즈카페 내 안전시설 부재로 인한 사고

○ 일시: 2013년 4월, 전주시 내 키즈카페

○ 사고 경위: 키즈카페 내 기차놀이 기구를 타던 8세 아이가 기차 지붕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함

○ 사고 부위: 머리 부상으로 사망

○ 문제점: 현장에 안전요원이 한 명 있었으나, 모서리엔 보호 덮개가 없었음

2) 관리자 인터뷰를 통한 안전사고 사례[1)]

□ 키즈카페 내 유기기구 관련 안전사고

○ 에어바운스

- 어린이가 에어바운스 출구에서 뛰어내리다 구조물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함(서울)
-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올라갔다가 어린이가 중심을 잃고 떨어짐(서울)
- 어린이가 에어바운스 위의 미끄럼틀 모형에서 뛰어내려 미끄럼틀 아래 있던 다른 어린이의 팔목을 골절시켰음(대구)

○ 배터리카

- 부모의 과격한 주행으로 아이가 떨어져 타박상을 입음(서울)
- 보호자(할머니)가 배터리카 주행로에서 배터리카에 충돌(경기)

○ 미니기차

- 혼자 탑승한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얼굴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함(서울)

○ 트램펄린

- 2010년 10월 음식점에 설치된 트램펄린을 함께 이용하던 어린이가 만 2세 남아의 팔을 밟아 우측 상완골 골절상을 입힘(소비자원)
- 2011년 3월 만 6세 여아가 트램펄린 이용 중 넘어지면서 척추 골절을 입음(소비자원)
- 2012년 9월 만 5세 여아가 트램펄린 이용 중 넘어지면서 팔꿈치 골절상을 입고 성장판 손상으로 수술(소비자원)

1) 관리자 인터뷰를 통한 사고사례는 한국생활안전연합(2012: 97-99)을 참조하여 정리

□ 키즈카페 내 어린이놀이기구 관련 안전사고

○ 폐쇄형 놀이기구

- 조합놀이대(폐쇄형 놀이기구)에 설치된 공중놀이기구에서 어린이가 착지하며, 바닥을 짚어 팔꿈치가 탈골되는 부상을 입음(경기, 대전, 대구)

○ 완구

- 탑승 가능한 완구자동차에 탑승한 어린이가 넘어진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귀 위를 지나가 귀가 찢어졌음(경기)
- 아이가 원목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려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함(대구)
- 파티방 문에 머리를 부딪쳐 아이의 이마가 찢어짐(경기)

3. 어린이 안전사고의 특징 및 대책

○ 사고 경험자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각 기구별로 다음과 같은 사고 원인을 보이고 있음

<표 26> 부모 인터뷰에서 파악된 사고 원인

기구		사고 원인	사고 유형
조합 놀이대	공중 놀이기구 (타잔)	· 공중놀이기구 작동 중 멈춤	추락
		· 공중놀이기구를 거꾸로 오르다 내려오는 어린이와 충돌	충돌
		· 다수 어린이가 몰려 충돌 및 추락 발생	추락/충돌
	볼풀장	· 볼풀이 비위생적임(먼지 많고 지저분함)	위생
		· 볼풀장에 누워 있는 경우 밟히거나 압착되는 경우 발생	충돌/압착
		· 인원제한이 없어 다수 어린이가 밀집 이용함	
모래놀이장		· 모래의 소독이나 교체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음	위생
		· 모래 놀이장 내 장난감이 모래, 이물질이 덮여 위생문제 발생	위생/흡입
		· 모래 놀이장이 밀폐되어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음	위생/흡입/공기질
에어바운스 및 트램펄린		· 어린이가 에어바운스/트램펄린 출입구, 꼭대기에서 뛰어 튕겨나가거나 다른 어린이, 물체 등과 충돌, 압착 발생	충돌/압착
		· 성인이 함께 들어오는 경우도 잦아 충돌, 추락 등 발생	충돌/추락
미니기차 및 배터리카		· 보호자 동승을 못해서 유아가 중심을 잡지 못해 떨어짐	추락
		· 보호자 동승 시 장소가 협소해 아동보호 불가, 보호자 충돌 우려	충돌
고정형 기구		· 팽이그네는 회전하며 타는 기구로 이용 어린이가 추락하여 기다리는 어린이에게 떨어지거나 의자, 구조물 등에 충돌	충돌
		· 작동 중 내리는 경우 / 움직이는 기구 사이로 다가가는 경우 발생	충돌
완구		· 완구 주변에는 관리자가 없어 사고의 위험이 높음	충돌/추락/베임 등
		· 여러 명이 이용하여 파손되어 베이거나 찢어지는 사고 발생	베임
		· 완구로 인증된 어린이용 헬스기구(러닝머신) 등은 속도조절, 멈춤 등의 기능이 없어 떨어지거나 넘어짐 발생	추락/충돌
기타 시설		· 식당 의자, 탁자, 유리벽이 투명하여 어린이의 충돌이 잦음	충돌/압착
		· 화장실이 어린이용과 성인용의 구분이 애매하여 불편하고 위험	추락/위생

○ 위의 키즈카페 내 안전사고 발생원인에 따라 안전관리 수칙 및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가 가능하며, 운영자 및 관리자에게 안전관리방안이 제시 및 홍보되고 실행되어야 함

<표 27> 부모 인터뷰를 통한 키즈카페 기구 안전관리수칙 제시

구분	내용
어린이 놀이 기구	· 연령 및 신장에 따른 이용자 구분 · 이용인원 제한 및 순서에 따른 탑승 · 명확한 출입구 구분 · 출구를 통한 출입 제한 · 볼풀 볼 및 모래놀이장(친환경 소재 등) 위생관리 필요(소독주기 필요) · 볼풀장 및 모래놀이장 이용 인원수 제한 및 볼풀 깊이 규정
유기 기구	· 연령 및 신장에 따른 성인 동승 기구의 분류 필요 - 동승불가 : 놀이형(에어바운스, 트램펄린(붕붕뜀틀)), 고정형 - 동승 : 미니기차, 배터리카 등(신장, 연령에 따라 별도 구분) · 주변 전기 장치 접근 규제 및 접근이 불가하도록 설치 · 주행형에 대한 안전벨트 및 안전장치 의무화 · 주변 시설과의 거리 조절 필요

제3장
어린이놀이공간의 해외 안전관리제도

제1절 일본
제2절 미국
제3절 영국

제 3 장 어린이놀이공간의 해외 안전관리제도

제1절 일본[2)]

☐ 놀이기구 기준 및 놀이시설 운용

○ 국토교통성이 도시공원 안전확보 가이드라인 발표 후 일본공원시설협회가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안전기준으로 JPEA-2002를 개발 후 JPEA-2008로 개정하여 운용함

- JPEA-2008은 어린이 성장발달단계에 따른 안전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체표준계측모듈을 참고로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놀이기구의 표준사용시간은 입지, 시설의 상황, 소재, 제조시기, 관리이력 등을 고려해 점검시기, 안전점검 빈도 등을 조정함
- 소모부품은 부품의 표준 사용 기간을 정해 교환 및 보수일정을 정하고, 마모·변형 등의 확인 시 교환주기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음
- 유지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체계는 일상 및 정기점검의 빈도와 시기조정, 조치방법 및 순서제시, 유지관리계획 제시, 정비, 사고 등에 대한 대응 안내 등으로 구성됨
- 재질의 특성, 종류, 점검방법 등에 대해 안전점검의 시점을 명확히 제시함
- 지속적인 안전관리 참고자료로 연도별 점검기록서 보관을 명확화함
- 놀이시설이력서에 설치연도, 안전점검 실시 상황 등을 기록함

2) 이 부분은 한국생활안전연합(2012), 김윤영(2009)의 자료를 참조함

○ 어린이놀이기구의 기술수준은 「건축기본법」에 부합하는 기준을 준용하고 미국 ASTM-F1487, 유럽의 EN1176을 권장함

○ 민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는 PSN(Playground Safety Network)을 통해 놀이시설 안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함

□ 놀이기구의 제조·시공 및 유지관리

○ 놀이기구의 제조는 제조자에 대해 단계별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승낙·협의 등을 행함

- 놀이기구의 유지관리는 유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제조자에 대해 놀이기구의 특성, 구조 등 놀이기구의 안전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놀이기구 설치 등의 시공은 시공자에 대해 단계별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승낙·협의 등을 행함

○ 놀이기구의 유지관리는 놀이기구 자체의 성능확보에 관한 점검 및 수리를 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시설이라는 관점을 갖고 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놀이기구의 구조와 노후 등을 요인으로 하는 위험발생잠재요소(Hazard)의 발견 및 제거를 중심으로 확실한 안전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정기적인 보수 등의 유지관리를 행하기 위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책정·실행하고 유지관리의 이력을 기록·보관함
- 안전점검은 유지관리 전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으로 초기의 동작확인을 위해 제조 및 시공자가 행하는 초기점검, 공원관리자가 행하는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공원관리자로부터 위탁받은 전문기술자가 행하는 정밀점검 등이 있음

- 특히 이상점검은 부식, 노후, 변형, 마모, 부재의 손실 등에 주의하고, 필요에 응하여 전문기술자에 의해 안전점검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 놀이기구의 안전점검이 불충분한 경우, 위험발생잠재요소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에 의해 중대한 사고가 일어날 염려가 높으며, 일상의 적절한 안전점검에서 위험발생잠재요소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능함

○ 확실한 안전점검을 행하고 발견된 위험발생잠재요소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에 맞는 놀이기구의 유지관리계획을 책정·실행함

- 유지관리계획의 책정 및 수정은 사고와 민원의 정보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놀이기구 노후화의 진행상황은 설치 후의 경과 연수, 놀이기구의 구조, 이용 상황, 지역의 기상조건, 입지조건 등에 따라 다르므로 공원관리자는 제조 및 시공자가 제시하는 보수 및 점검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해 각각의 놀이기구의 설치상황 등에 대응한 적절한 점검빈도를 설정함

□ 놀이기구 안전점검의 종류 및 내용

○ 공원관리자의 입회하에 놀이기구의 초기 동작성능 확인을 위해 제조 및 시공자가 설치 직후 초기점검을 실시함

- 동적인 구조를 갖는 놀이기구와 신설계의 놀이기구는 초기불량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목재놀이기구 중에는 설치 후 볼트류의 증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므로 이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기점검을 행함

○ 공원관리자가 주로 묵시와 촉진, 청진 등에 의해 시설의 변형과 이상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상업무 중에서 일상점검을 실시함

- 구조부재는 흔들림과 부식, 노후가 진행되기 쉬운 기초부분의 상태 등에, 소모부분은 부재의 탈락, 소실, 파손이 없는지 변형과 마모의 유무

및 정도 등에 착안하여 행함

- 변형 및 이상을 발견한 경우 놀이기구의 일부 및 전체의 사용중지 조치를 행함과 동시에 필요에 응해 놀이기구의 구조와 점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능을 가진 전문기술자에 의한 점검을 행함
- 묵시, 촉진, 청진이 주체로 되기 때문에 점검을 행하는 자의 경험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고, 진단결과에 개인차가 있는 것이 예상됨
- 가능한 한 객관적 진단을 행하기 위해서는 점검기록서를 작성하여 점검을 행하는 것이 유효함
- 놀이기구 본체와 병행해서 설치면과 식재 등을 포함한 놀이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인가라는 시점으로 점검을 행하는 것이 요구됨

○ 공원관리자가 필요에 응하여 전문기술자와 협력해 일상점검보다 상세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일정기간마다 실시함

- 정기점검에서는 구조부재, 소모부재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 정밀한 점검을 행함
- 변형 및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놀이기구의 일부 또는 전체의 사용 금지 조치를 강구함
- 필요에 응해 놀이기구의 구조와 상세한 점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전문기술자의 점검을 받음

○ 공원관리자로부터 위탁된 전문기술자가 상세히 행하는 정밀점검을 실시함

-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시에 위험발생잠재요소로 생각되는 것이 발견되어, 특히 정도가 높은 진단이 필요할 때에 전문기술자가 행함

❑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제도

○ ASTM F846-92를 근간으로 하여 「건축기본법」에 부합하는 기준을 준용

하고 있으며, 이 법의 유기시설에 포함되는 경우 모두 검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함

- 「건축기본법」에 따른 검사항목, 사항, 방법, 판정기준, 결과표 등을 제시하며, 검사방법은 운행 전 검사와 운행 후 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 운행 전 검사에는 설치허가를 위한 건축확인(설계검사)과 사용허가를 위한 착공 후 중간검사 및 완공후 완료검사가 있으며, 사용허가 후 운행 중에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 유기기구의 설치허가 및 사용허가 절차는 건축주사(특정행정청)를 통하는 절차와 지정확인 검사기관(민간)을 통하는 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음

- 유기시설을 승강기와 동일시하여 「건축기본법」에서 공작물로 지정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 유기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소유자가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하면서 밟아야 하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 검사제도로 구분됨

- 즉 유기기구의 사용 전 허가와 관련한 검사제도와 사용허가 후 운행을 하면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검사제도 등이 있음

☐ 유기기구 사용 전 검사

○ 유기기구를 설치해 운행을 하기까지의 사용허가와 관련한 검사제도는 설계단계의 확인검사, 착공 후의 중간검사, 완공 후의 완료검사 등의 절차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음

- 건축확인검사 단계에서는 설계도면, 기계재료, 구조계산서, 강도계산, 안전계수 등의 공학적 계산에 따른 안전성을 심사하여 건축확인(설치허가)증을 발급한 후 유기기구의 착공을 하도록 규정함
- 구조계산이 주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반영하여 지정구조계산적합성판정기관을 지정해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있음

- 지정구조계산적합성판정기관은 지정확인검사기관과 다른 업무를 보고 있으며, 운행 후 검사인 정기검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국토대신 등록 강습을 할 수 있는 지정검사 자격자 등록 강습기관과도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전문기관임

○ 확인검사필증 및 완료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유기기구의 운행 및 사용이 가능함

○ 확인검사 및 완료검사는 건축주사를 두고 있는 특정행정청(관청)을 통하는 방법과 국토교통대신이 지정하는 지정확인검사기관(민간)을 통하는 방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유기기구 유지관리 검사

○ 사용 허가를 받고 유기기구를 운행하기 시작한 후에는 유지관리와 관련한 검사제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 유기기구에 대한 유지관리는 정기검사의 의무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기검사는 특정행정청에 신청하여 검사자격증을 가진 검사자격자에 의해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연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연 2회의 정기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정기검사와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자체점검은 일일검사와 함께 월 1~2회가 보통이며, 이것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유기기구별 담당 검사자격자의 배치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기구별 안전관리자의 배치도 법률화되어 있지 않으나 지침으로 배치를 권고하고 있음

○ 유기기구의 정기검사 보고제도는 보고서 작성 미흡 및 검사의 전문지식 필요성에 따라 1970년 개정으로 검사자격자가 실시

- 현재 일본에서 정기검사 보고제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단체는

크게 국토교통성의 지도하에 있는 중앙법인과 각 도도부현의 지도하에 있는 지방법인으로 구분됨

- 정기검사 보고서는 대략 6개월~1년 간격으로 특정행정청이 정하는 시기에 실시해, 양식에 따른 정기검사결과보고서 및 정기검사결과보고 개요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2008년 3월 10일 국토교통성 고시 제284호를 통해 정기검사의 항목, 사항, 방법 및 결과의 판정기준 외 검사결과표 등이 제정되었으며, 그 중 정기검사 항목에 주행차량 및 차륜장치는 탐상시험이 포함되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시간 및 비용 증가의 고충이 따름

☐ 유기시설 안전성검사 관련 법제

○ 건축확인검사, 중간검사, 완료검사 등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주사를 통한 절차 및 지정확인검사기관을 통한 절차는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함

○ 형식적합인정 및 형식부재 등 제조자 인증은 국토교통대신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대신에 의해 지정받은 지정인정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음

- 구조방법의 인정은 국토교통대신이 하지만, 전단계의 성능평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대신 외 국토교통대신으로부터 지정받은 지정인정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음
- 형식적합인정 및 형식부재 등 제조자 인증은 국토교통대신 또는 지정인정기관이 인정·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는 국토교통대신이 실시하지 않고 지정인정기관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인구 25만 명 이상의 시는 그 장의 지휘 감독하에 건축주사를 두어야 함

- 시·군·읍은 그 장의 지휘감독 아래 확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건축주사를 둘 수 있음
- 시·군·읍은 건축주사를 두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설치에 대해 도·도·

부·현 지사에 협의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함

- 도·도·부·현은 지사의 지휘감독하에 건축주사를 둔 시·군·읍의 구역 외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관계되는 규정에 의해 확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건축주사를 두어야 함
- 건축주사는 시·군·읍 및 도·도·부현의 직원으로 각각 시·군·읍의 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임명함

○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검사자격자에게 검사를 시켜 그 결과를 특정행정청에 보고해야 함

○ 유기시설의 정기검사를 하는 자는 '1급건축사 및 2급건축사 또는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함

-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는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여 건축기준적합판정자격자, 승강기검사자격자로서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익히도록 하는 강습을 수료한 자, 기타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정하도록 함

❑ 놀이기구·유기기구 관련 안전관리제도

○ 놀이기구 및 유기기구의 기술수준은 「건축기본법」을 중심으로 미국의 ASTM과 유럽의 EN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 어린이놀이기구는 JPEA-2008을 통해 어린이에게 맞는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유기시설은 설치 시 「건축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를 실시함

○ 유기시설은 설치 시 모두가 「건축기본법」의 관리를 받고, 검사기관은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공정성과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

제2절 미국[3)]

☐ 놀이시설 안전사고의 원인 및 개선안

○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요구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은 NPSI(National Playground Safety Institute)를 1993년에 설립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연구개발 수행 및 놀이시설에 대한 국가정보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최근에 NPSI는 놀이시설 안전사고의 주원인을 분석하여 “The Dirty Dozen: A Checklist for Safe Playgrounds”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표함

<그림 5> NPSI 로고



자료 : National Recreation and Park Association (www.nrpa.org)

○ 이 보고서에 제시한 놀이시설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과 개선안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원인으로 딱딱한 놀이시설의 바닥을 들고 있으며, 적절한 표면의 재질과 부적절한 표면의 재질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3) 이 부분은 김윤영(2009), 보건복지부(2006) 등의 자료와 National Recreation and Park Association (www.nrpa.org),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www.cpsc.gov) 등의 웹사이트 문서를 참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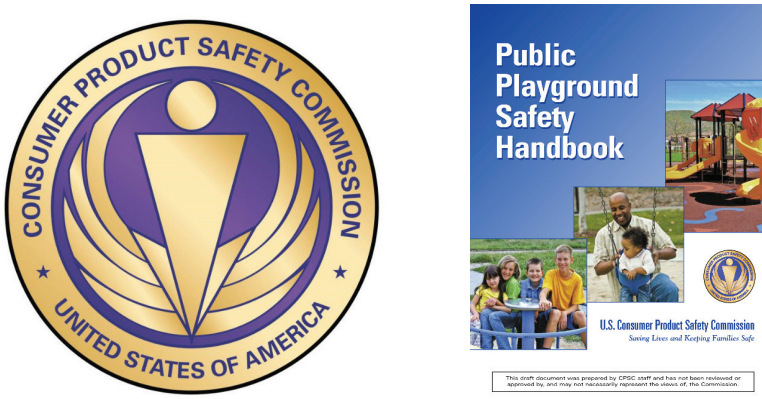
- 두 번째 원인으로 낙상 대비 부족을 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어린이가 놀이기구 중에 떨어질 수 있는 놀이기구 아래와 주변 바닥은 충격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표면의 재질로 구성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
- 그 외에 돌출부분에 의한 위험, 머리 낌, 놀이기구 간 공간 부족, 넘어짐 위험 등의 원인이 열거되어 있으며, 각각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음

☐ 놀이시설 안전 관련 법제

○ 놀이시설 안전 관련법을 보유하고 있는 주는 현재 17개 지역인 것으로 파악됨

-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에서 발행한 지침서 「Handbook for Public Playground Safety」와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의 기술규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주별로 그 범위와 내용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그림 6> CPSC 로고 및 발간 핸드북



자료 :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www.cpsc.gov)

* CPSC는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미국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에 근거해 1974년에 설립되었고, 어린이 공공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미국 내 유통되는 다양한 종류의 소비자 물품의 안전과 유통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 ASTM은 어린이 안전을 고려한 놀이시설의 표준화와 연구업무의 추진을 목적으로 1902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의 공업 원료 및 그 시험법의 표준화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규격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음
* 놀이시설의 표준과 안전에 대한 내용은 ASTM F1487 등에 기술되어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이를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음

○ 놀이시설 안전 향상은 정부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기보다는 비영리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 대표적으로 NPPS(National Program for Play ground Safety)를 들 수 있는데, 이 기관은 비영리단체로서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관련연구, 교육훈련, 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 모든 어린이는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노는 것을 배우고, 배우기 위해 놀아야 하며, 안전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놀이를 통해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

○ NPPS는 제도적 측면과 관련해 놀이시설의 안전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National Action Plans를 제시함
- 이 계획에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서 각각 추진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어린이를 위한 공공 놀이시설과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음

○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 시 혹은 놀이기구 제조 시, CPSC가 발행한 「Handbook for Public Playground Safety」 지침서를 참고해 안전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제품을 제작함

- 본 핸드북의 내용은 놀이시설의 위치, 레이아웃, 놀이기구, 바닥, 재질, 조립과 설치 등 놀이시설의 일반적인 고려사항, 놀이시설의 위험요소, 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놀이시설의 세부요소설명, 체크리스트와 테스트 방법(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핸드북은 1981년 이후 CPSC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그 내용이 갱신되고 있음

☐ CPSI

○ CPSI(Certified Playground Safety Inspector)는 놀이시설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검증받고 놀이시설의 안전을 점검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놀이시설이 안전 측면에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하고 그 기준은 CPSC와 ASTM의 기술적 규정을 따름

- 현재 미국 내 8000명 정도의 CSPI가 활동하고 있으며, 놀이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준 적합 여부를 찬정하고 있음
- CPSI가 되기 위해서는 3일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합격 시 3년 동안의 자격을 갖게 되고 3년이 지나면 처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험을 다시 치러 합격해야만 공식적으인 CPSI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그림 7> CPSI 과정 수료식 모습



자료 : International Playground Safety Institute (www.internationalplaygroundsafetyinstitute.com)

☐ 놀이시설 안전 향상을 위한 캠페인 활동

○ 미국 전역에서 참여하는 놀이시설 안전 캠페인 Playground Safety Week는 1997년 2개 주에서 참여한 것으로 시작해 2004년에는 45개 주가 참여하기에 이르고 2010년에는 30개 주가 참여함

○ 캠페인의 목적인 보다 안전한 놀이시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며, Playground Safety Week 기간 동안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야외활동, 특히 놀이시설 안전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보수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기회를 가짐

☐ 유기시설 안전성 검사제도

○ 국제유기시설협회(IAAP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musement Parks and Attractions)에서는 ASTM의 F-24위원회가 개발한 정비기준(Standards on Amusement Rides and Device)을 토대로 유기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함

○ ASTM의 F-24위원회는 유기기구 및 시설의 설계·제조·운행·유지관리 및 검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 대부분의 주가 이 정비기준을 따르고 있음

- F24(Technical Committee F24 on Amusement Rides and Devices)는 ASTM의 여러 위원회 중 하나로서, 23개국 출신의 전문가 회원 28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 2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2~3일간 약 100명의 회원들이 기술적 토론을 실시함

○ 미국 유기시설의 안전기준은 매우 전문적이고 공학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기술자 및 분야별 전문가가 개발한 규격 지침인 ASTM 기준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F-24에서 개발하는 기준들은 유기기구 관련 기술자 및 제작자, 유기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 검사요원 등 유기산업의 전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음

○ 기준의 내용은 기구의 설계 및 제조, 각종 시험, 작동 및 운영, 보존 및 유지, 점검, 품질 보증, 관련 전문 용어에 대해 다룸

○ 다국적 회원들의 협력을 통해 유기산업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안전기준의 개발을 위해 노력함

○ F-24는 유기기구 및 유기시설과 관련한 기준 개발에 있어 세부영역에 따라 테스트 방법, 분류 및 용어, 설계 및 제조, 유지 및 검사, 운영, 특수기구 및 시설, 물놀이 기구, 국제적 협력 및 적용, 행정 등 9개의 하부 분과위원회로 구분됨

제3절 영국[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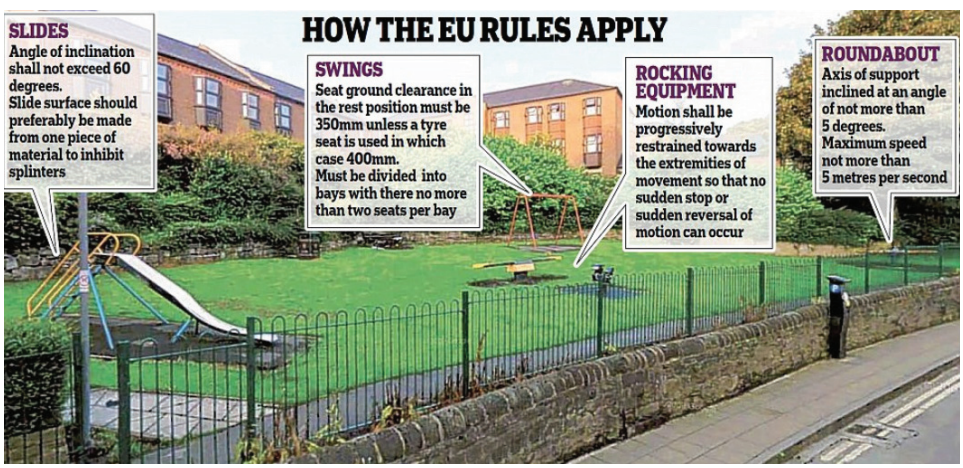
☐ 놀이시설 안전검사 관리기관

○ 영국 정부는 RoSPA(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라는 이름의 기관을 통해 사고 관련 예방 및 이와 관련한 규정을 관리하고 있음

○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도 RoSPA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음

- 영국의 모든 놀이시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문제, 장비, 추가 부수적인 시설물에 대해 독립덕인 전문가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이러한 검사는 RoSPA에서 규정한 법적 조항, 사고 시의 보상 책임하에 EN1176(The new European Playground Standards) 규정을 만족해야 함

<그림 8> EN1176 적용법을 다룬 신문기사



자료 : www.dailymail.co.uk

4)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2011)의 자료와 RoSPA(www.rospa.com), Townswomen's Guild (www.townswomen.org.uk), Association of Play Industries (www.api-play.org) 등의 웹사이트 문서를 참조함

□ 놀이시설 안전규정의 배경

○ 어린이 안전규정에 관한 Townswomen's Guild라는 이름의 기관 및 RoSPA와의 합동 통계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지방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도심이나 주택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율이 더욱 높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음

○ 건강안전관리국의 국장은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은 RoSPA와 같은 인증받은 기관이나 검사기관에 의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받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에는 더욱더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이 상존함

○ RoSPA는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저렴하게 각 지역이나 작은 단체, 학교, 상업시설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에 순회 검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놀이시설 안전 관련 법제

○ 놀이시설 안전과 관련한 법으로 「The Occupiers Liability Acts」와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등이 있음

○ 이들 법령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합법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 The Occupiers Liability Acts (1957)

○ 법에는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 책임과 관련된 관리자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사고가 예견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놀이시설 관리자가 방문자들이 합법적이든 침입자이든 상관없이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관리자는 아동의 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이는 아동의 위험 판단 및 방지 능력이 성인과 다르기 때문임

○ 놀이시설의 훼손으로 인해 아동의 상해가 예견되는 곳은 잠재적 위험가능성을 제거하고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즉각적이고도 적절한 임시 수리를 실시하고 위험한 놀이시설물을 제거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며 위험요소가 없는 튼튼한 울타리를 사용함

○ 놀이시설 관리자의 안내표지판은 이용자에게 중요한 안전 정보 및 위험 관련 경고를 제공함

- 관리자 안내표지판의 위치는 놀이시설물의 위험성 및 결함에 대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함
- 이는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배당하는 경우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임

□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

○ 법에는 직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용자에 대해 보호 의무를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관리자에게는 놀이시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건강과 안전에 관한 책임 및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이용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함

○ 본 법령에 대한 의무는 건강안전행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환경보건부서에 의해 시행됨

○ 본 법령에 제시된 의무 불이행 시에는 개선 및 금지 통보, 벌금, 구류 판결 등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 놀이시설 안전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안전제도의 정립 및 적용임
- 안전제도는 시설 규준에 포함된 모든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모든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고려하며,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적당한 수준에서 예방하고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해야 함
- 입지, 목표대상, 설비 및 표면재 선택, 설계 및 배치, 설치, 검사 및 유지, 사고 절차의 고려를 포함함

○ 영국 정부는 공공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EN 1176-1177) 적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음
- 지자체에서 설치 및 유지관리를 주도적으로 실행함
- 자체적인 설치 및 관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전문적·효과적인 정밀검사 제도라 할 수 있음

❑ 놀이시설 설비 및 표면처리 검사

○ EN 1176-7은 놀이시설 설비, 표면처리 및 시설 검사에 대한 필요 요소를 정기외관검사, 운영검사, 연례주요검사로 명시하고 있음

○ 관리주체의 단계적 검사에 기초한 정기적인 점검 제도의 확립을 요구함

○ 운영자는 검사빈도와 관련하여 제조자의 지시에 따를 필요가 있음

○ 제조자의 지시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놀이시설에 적합한 검사 일정에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함

○ 충분히 훈련받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으며 운영자의 보험업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에 의해 검사가 실행되어야 함

<그림 9> API 홈페이지에 소개된 좋은 놀이터 설계



자료 : Association of Play Industries (www.api-play.org)

○ RoSPA, ILAM 및 API(Association of Play Industries)와 NPFA는 RPII (Register of Play Inspectors International)를 2000년에 설립함
- RPII의 목적은 아동의 놀이시설 안전평가에서 검사되고 유능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놀이터 검사자를 등록시키기 위함임

❑ 놀이시설 위험도 평가

○ 위험도 평가는 Work Regulation의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1992)의 필요조건으로서 안전한 놀이터 보존의 필수요소임

○ 위험도 평가의 내용은 가능한 모든 위험의 규명, 상해 가능성 및 잠재적인 심각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방법 고려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계획, 조치 우선순위 결정, 감독 및 결과물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절차임

○ 보건안전청(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은 최소 2년에 1회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위험도 평가는 NPFA와 보건안전청의 협의과정에서 고안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5단계의 체계적 접근에 의해 이루어짐

- 즉 위험요소 규명, 위험요소의 결과로서 사고발생 가능성 평가, 각각의 위험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상해 및 피해 정도 평가, 확인된 위험이 아동에게 발생가능한 피해정도를 알기 위한 NPFA 위험요소 추정, 위험이 확인된 허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대한 권고 등의 순으로 구성됨

❑ 놀이시설 유지 및 보수

○ 위험도 평가 또는 기타 검사 실시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소를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함

○ 놀이시설 운영자는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보수·유지해야 함

-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유능한 사람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보수 작업에 대한 제조자의 요구를 따라야 함
- 응급상황 및 보수에 대응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작동 못하도록 설비를 고정시킬 수 있음
- 위험도 평가에 기초한 작업의 우선순위작업에 대응할 수 있음
- 제조자가 제시하거나 필요에 따른 정기보수과정을 실행하고, 작업 기록을 보유함

○ 설비 품목이 보수, 대체부분 및 상당한 수정이 필요한 곳에서는 제조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제조자가 더 이상 거래하지 않는 경우처럼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유능한 전문적인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 놀이시설 운영자는 안전제도관리의 사고처리 절차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상해 조치법 및 가능한 한 빨리 놀이시설 관리자에게 사고가 알려질 수 있도록 보고절차 구성을 고려하며 운영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제공함

○ 사고절차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시기, 내용, 상해에 대한 세부사항, 목격자 및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하는 충분히 구체적인 사항이 기록되어야 함
- 유능한 전문가가 즉시 그 장소에 가서 임시 위험 평가를 해야 함
-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화된 치료적 조치가 취해져야 함
- 다른 장소, 설비를 사용하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사고의 영향과 필요한 어떠한 결정 또는 향후 조치를 고려하며 더 광범위하게 검토·기록되어야 함

☐ 안전관리제도의 중점사항

○ 관리 및 운영주체자는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놀이시설 개·보수 및 교체를 해야 함

○ 놀이터는 가능한 한 많은 놀이적 가치를 가져야 하지만 반드시 더 많은 안전이 담보되는 것이 최우선시되어야 함

○ 놀이시설은 재미있으면서 아이들에게 도전과 흥미를 유발시켜야 하므로 놀이 중에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배운다는 놀이의 가치에 초점을 두어야 함

○ 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놀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사고보다는 심각한 상처·상해를 줄이는 것임

○ 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의 주요 관건은 특정 기준의 부합여부가 아닌, 어린이가 사용하는 데 있어 어떠한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는가를 미리 파악하고 심각한 상처·상해의 발생을 최소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임

제4장
어린이놀이공간의 안전관리제도 현황

제1절 어린이놀이공간 관련 법 구성체계
제2절 어린이놀이기구의 인증 및 안전관리제도
제3절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제도
제4절 국내 안전관리제도의 비교 및 문제점

제 4 장 어린이놀이공간의 안전관리제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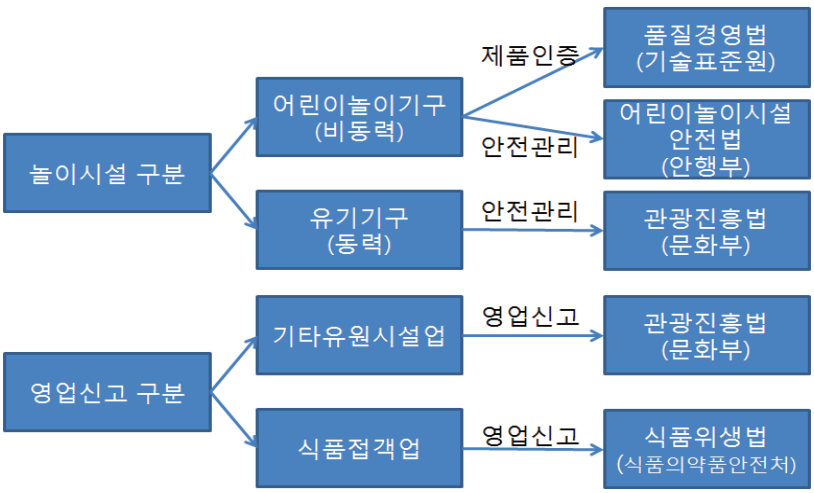
제1절 어린이놀이공간 관련법 구성체계

○ 현재까지는 어린이놀이공간의 안전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법제도를 내에서 접근해오고 있음
- 어린이놀이공간 내 어린이놀이기구와 관련된 인증 및 안전관리
- 어린이놀이공간 내 유기기구와 관련된 업종 인허가 및 안전관리
- 키즈카페 등 신종 어린이놀이공간의 영업허가

○ 즉 어린이놀이공간 내에서 놀이기구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며 어린이놀이공간의 영업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짐
- 예컨대, 어린이놀이공간에서 동력을 이용하는 놀이기구인 유기기구(미니버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지만,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놀이시설(미끄럼틀 등)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법」의 적용을 받음
- 또한 어린이놀이공간의 서비스와 영업장소와 방법 등을 기준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 및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거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영업 신고를 함

○ 그에 따라 동일한 성격의 어린이놀이공간이라도 안전행정부, 문화부, 식품위생처 등 상이한 부처의 관리 대상이 되는 상황임

<그림 10> 어린이놀이공간 적용법규



제2절 어린이놀이기구의 인증 및 안전관리제도

※ 어린이놀이기구의 정의, 범위,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적용되고 있음

1. 법의 제정 목적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제정목적

○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영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따라서 어린이 놀이기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법률대상 중에 하나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제정목적

○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표 28> 어린이놀이기구 관련법의 제정목적

법률명	목적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품의 품질 인증 -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 - 어린이놀이기구 이외 다른 제품도 포괄하는 포괄법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규정 - 행정기관의 역할 -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

2. 어린이놀이기구 및 놀이시설의 정의

□ 어린이놀이기구의 정의

○ “어린이놀이기구”는 특정 연령층이 유희 목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범위의 놀이기구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 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함

○ 어린이놀이기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신체적 위해, 재산상 피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되어 품질인증을 통과한 제품만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하나임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 8.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어린이놀이기구의 종류

○ 어린이놀이기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1에 근거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규정되어 있음

○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2. 어린이놀이기구」에 따르면 어린이놀이기구는 비동력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기구를 뜻함

○ 따라서 다음의 놀이기구는 어린이놀이기구에서 제외됨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기구
- 물놀이에 사용되는 놀이기구

○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2. 어린이놀이기구」
- 3.1 어린이 놀이기구. 어린이들이 스스로 규정한 규칙이나 이성적 판단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는 놀이를 위해 제작된 부속품 및 구조체를 포함한 기구와 구조물로서 옥내·외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 혹은 집단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어린이놀이기구의 종류는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건너는 기구, 조합놀이대, 충격흡수용 표면재, 기타 놀이기구 등이 있음

<표 29> 어린이놀이기구의 종류(11종)

종류	정의
그네	하중 지지대에 매달려 있는 좌석·받침판이 앞뒤·좌우 등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된 것
미끄럼틀	경사면을 가진 구조물로서 이용자가 규정된 트랙 내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
정글짐	통나무·파이프·타이어 등으로 구성된 육면체, 둥근 지붕 또는 탑 모양의 구조물로서 자유롭게 매달릴 수 있도록 설계된 것
공중 놀이기구	손잡이를 잡고 매달리거나 공중에 매달려 있는 좌석에 앉아서 케이블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회전 놀이기구	한 개 이상의 좌석·받침판·손잡이가 설치되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트랙을 따라 회전하도록 설계된 것
흔들놀이기구	아랫부분의 구성체가 좌석이나 자리를 지지하는 형태로서 이용자가 그 좌석이나 자리에서 그 놀이기구를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된 것
오르는 기구	봉·로프·그물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물로서 손으로 붙잡고 오르내리도록 설계된 것
건너는 기구	일어서거나 기거나 매달려서 앞뒤·좌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조합놀이대	위의 놀이기구 중 두 가지 이상의 놀이기구가 결합된 형태인 것
충격흡수용 표면재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가 사용인 것
기타 놀이기구	상기 유형 이외의 놀이기구로서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

○ “어린이놀이시설”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어린이놀이기구를 이용하여 노는 특정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와 해당 시행령에 의거하여 14개 장소를 뜻함

○ 어린이 놀이시설은 11개 어린이놀이기구를 사용하는 14개 장소로 휴게시설, 도시공원, 대중목욕탕,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의료기관, 아파트단지, 학원, 초등학교·특수학교 등이 해당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2
-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1.「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도로법 시행령」제2조 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식품위생법」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아동복지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8.「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의료법」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11.「초·중등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1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현황

☐ 안전관리의 주요 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안전점검,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함

☐ 설치검사

○ 법 제12조 제1항

○ 어린이놀이기구를 상기 14개 장소에 설치할 때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 정기시설검사

○ 법 제12조 제2항

○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해야 함 (현재 2년에 1회 실시)

□ 안전점검

○ 법 제15조 제1항

○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시행령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을 육안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표 30>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관련, 시행령 별표 6)

1. 안전점검의 항목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老朽) 정도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변형 상태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청결 상태
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바.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2. 안전점검의 방법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호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 양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주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수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3.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안전진단

○ 법 제16조

○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 안전교육

○ 법 제20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법령·실무지식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2년에 1회씩 받아야 함

☐ 보험가입

○ 법 제21조

○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가입 해야 함

☐ 중대사고에 대한 보고

○ 법 제22조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중대사고는 사망, 3명 이상 동시 부상,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골절상을 입은 경우, 출혈이 심한 경우,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내장이 손상된 경우 등임

제3절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제도

1. 법의 제정 목적

□ 「관광진흥법」의 제정목적

○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법 제1조)

○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유기기구 및 유원시설업의 관리시스템의 주요 대상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로 한정하고 있음

○ 그에 따라 어린이와 시민이 자신의 지역(행정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관광진흥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존재

2. 유기기구 및 유원시설업의 정의

□ 유기기구의 정의

○ 유기기구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의 법규상 정의 내려져 있지는 않음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09-4호))의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유기시설(遊技施{設)·유기기구(遊技機具)는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또는 시설물(건축물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물과 기구·기계를 결합한 형태로서 이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을 뜻함)

○ 현재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유기기구가 관리되므로 관행상 유기기구는 다음을 뜻함

-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도 이용하는 놀이기구
-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와 비대상 유기기구를 포함

☐ 유원시설업의 정의

○ 유원시설업 : 유기기구 등을 이용하여 관광객 대상으로 영업이익을 취득하는 업종을 뜻함

○「관광진흥법」 제3조 제6항
-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

☐ 유기기구의 종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유기기구의 종류를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유기기구의 종류는 크게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놀이형 등 4가지임

<표 3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대분류	중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주행형	궤도 주행형	일정한 궤도(레일·로프 등)를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카이 사이클, 모노레일, 스카이제트, 꼬마기차, 미니자동차, 정글마우스, 미니코스터, 제트코스터, 루프코스터, 공중궤도라이드, 궤도자전거

대분류	중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주로 주행형	일정한 주로(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스포츠카, 무궤도열차, 봅슬레이
	수로 주행형	일정한 수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수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후룸라이드, 신밧드의 모험, 래피드라이드
	자유 주행형	일정한 지역(공간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지면, 수면)을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포츠카, 범퍼카, 범퍼보트
고정형	종회전 고정형	수평축을 중심으로 하여 승용물이 수직방향으로 수직원운동 또는 요동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관람차, 플라잉카펫, 아폴로, 레인보우, 바이킹, 고공파도타기, 스카이코스터
	횡회전 고정형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이 수평방향으로 수평원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그네, 회전목마, 티컵, 회전보트, 점프라이드, 뮤직익스프레스, 스윙댄스, 타가다디스코, 닌자거북이
	복합 회전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동시에 승용물이 회전·반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비행기, 우주전투기, 점프보트, 다람쥐통, 스페이스자이로, 엔터프라이즈, 문어다리, 왕문어춤, 슈퍼스윙, 베이스볼, 브레이크댄스, 풍선타기, 슈퍼라이드, 사이버인스페이스
	승강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승용물이 상하운동 및 좌우운동으로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패러슈터타워, 타워라이드, 프레쉬팡팡
관람형	기계 관람형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계구조물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영상모험관
	입체 관람형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설(건축물·일정한 공간 등)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쇼킹하우스, 다이나믹시트, 전래동화관
놀이형	일반 놀이형	이용객 스스로가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서 설치된 기계·기구를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펀하우스, 미로, 모험놀이
	물놀이 형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틀 등)을 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기계·기구 등을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파도풀, 유수풀, 바디슬라이더, 튜브라이더, 서핑라이더, 수중모험놀이

자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 한편,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도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별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표 32>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유형	내용	예시
가. 주행형	일정 궤도·주로·지역(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시속 5킬로미터 이하 속도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배터리카, 미니기차, 미니자동차, 멜로디페트, 이티로보트, 수상사이클 등
나. 고정형	회전반경이 3미터 이내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솔저로보트, 우주전차, 아기돼지, 롤스로이스, 에어울프, 미니기, 다람쥐, 우주왕복선, 경찰오토바이, 아파치헬기, 슈퍼스포츠카, 스텔스기, 슈퍼미니차, 코끼리, 마징가제트, 풀리스카, 잠수정, 공룡, 마린보트, 스카이돌핀, 목마(말), 닭, 당나귀, 펠리컨 등
다. 관람형	일정한 시설물(기계·기구·건축물·보조기구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도깨비집, 거울집, 3D 또는 4D 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설), 투시경, 미니시뮬레이션, 만다라 등
라. 놀이형	일정한 시설(기계·기구·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사격, 베이비골프, 미니골프, 활쏘기, 투환, 공쏘기, 광선총,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로데오타기, 공굴리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플레이스페이스, 붕붕뛰틀, 점프대, 가상체험,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미니에어바운스,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인형뽑기 등

자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3. 유기기구 안전관리제도 현황

☐ 안전관리의 주요 내용

○ 「관광진흥법」에서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에 대해서 모두 검사하는 시스템이 아님

○ 「관광진흥법」에서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수가 일정 규모에 달하는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에 대해서만 안전성검사를 실시

○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다음의 안전관리제도를 갖추고 있음

- 안전성검사(법 제33조 제1항)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법 제33조 제1항)
- 안전관리자 배치(법 제33조 제2항)
- 영업질서의 유지(법 제34조)
- 영업 등록취소(법 제35조)
- 폐쇄조치(법 제36조)
- 과징금의 부과(법 제37조)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카지노업 등과 함께 관광사업의 한 유형으로, 영업등록취소·폐쇄조치·과징금 부과 등 법령 제35~37조는 모든 관광사업 유형에 적용되는 조항임

☐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 조사

○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안전성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업종은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임

-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항목별로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함
- 허가를 받은 후에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성검사
-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지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표 33> 유원시설업의 유형

유형	정의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단,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더라도 대지면적(실내는 건축물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발전시설, 의무시설, 안내소가 없고 음식점시설 또는 매점이 없는 경우는 일반유원시설업에 해당(「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자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 여기에서 기타유원시설업은 비검사대상 유기기구만을 가지고 있는 업종으로, 안전성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지 않고 설립 허가를 받을 때 검사가 제외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만 받으면 됨

○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안전성검사를 위탁실시하고 있음

- 관광진흥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에 관한 권한은 이를 안전성검사를 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및 전문연구·검사기관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관광진흥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 현재 안전성검사기관 :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문화관광부 고시 2000-6호)

❑ 안전관리자의 배치

○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해야 함(법 제33조)

○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표 34>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의 수	안전관리자의 수
유기기구 1종 이상 10종 이하	1명 이상
유기기구 11종 이상 20종 이하	2명 이상
유기기구 21종 이상	3명 이상

자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2

❑ 유원시설업의 영업 준수사항

○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은 별도의 준수사항이 있음(법 제32조)

- 준수사항은 ① 이용자 안전, ② 시설 안전, ③ 수질 관련 위생 안전 등으로 구분됨(시행규칙 별표 제10의 2)

<표 35>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의 준수사항

안전 유형	준수사항
이용자 안전	-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함 - 음주 등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하고, 해당 유기시설·유기기구별 신장 제한 등에 해당되는 어린이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하여야 함 -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하여 주변 공간, 부속시설,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기구별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산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구별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안 됨 - 영업 중인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 사업장에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 -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야 함
시설 안전	-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함 -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함
수질 등 위생 안전	-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설계도에 제시된 유량이 공급되거나 담수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을 표시함(변경된 부분에는 변경된 수심을 표시) - 수영장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유물 및 침전물의 유무를 상시 점검하여야 함 - 풀의 수질검사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공정시험기준을 따르며 일정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함

자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제10의 2

○ 일반적인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36> 유원시설업의 준수사항

안전 유형	준수사항
안전관리자	○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자 -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 유원시설·유기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작성한 안전점검일지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기타유원시설업자 - 본인 스스로 또는 운행자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함 ○ 1년 미만으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 - 안전점검일지 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매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설 안전	-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조명은 6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함.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유기시설은 제외 - 안전수칙 게시: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준수사항 및 이용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함
이용자 안전	○ 운행 전 - 이용자를 태우는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전 개시 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띠 또는 안전대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함 ○ 운행 중 -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행동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유기기구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

제4절 국내 안전관리제도의 비교 및 문제점

1. 두 법제도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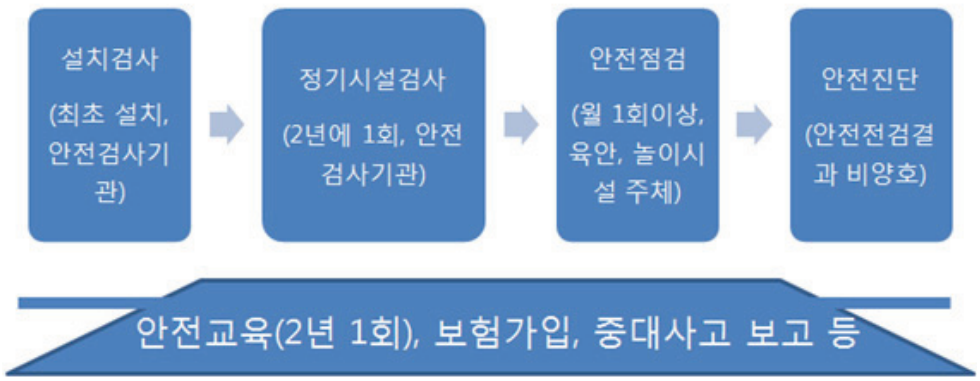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관광진흥법」의 안전관리시스템은 검사대상, 검사주기, 보험가입여부 등에서 상이함

<표 37> 어린이놀이기구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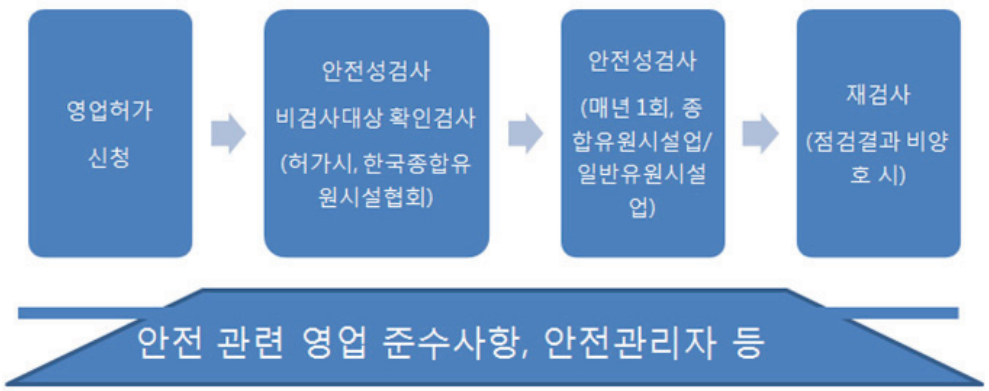
구분		종류	설치	유지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그네, 미끄럼틀, 흔들놀이기구, 조합놀이대 등 11종 어린이놀이기구	- 「품질경영법」으로 제품안전인증 - 「어린이놀이시설법」으로 기구별 설치검사	- 자체 안전점검(매월, 육안) - 정기검사(2년) - 보험가입 - 안전교육(2년)
「관광진흥법」	검사대상 (종합·일반유원시설업)	바이킹, 회전목마, 롤러코스터, 가상체험 등 수백종	- 유원시설업 허가 전에 설치검사	- 자체안전점검(매일) - 정기검사(1년) - 보험가입 - 안전관리자 배치
	검사비대상 (기타유원시설업)	미니기차(시속 5km 이하), 트램펄린, 에어바운스, 말타기 등 70여 종	- 유원시설업 허가 전에 검사비대상 확인조사	- 자체안전점검(매일) - 보험가입 - 안전관리자 없음 - 정기검사 미실시

○ 두 법의 안전검사 관련 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음

<그림 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 절차



<그림 12> 「관광진흥법」의 안전관리 절차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분석

○ 현재 키즈카페 등은 신종 놀이공간은 사업체의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힘듦

- 현재 키즈카페 등은 식품을 조리할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에 따라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등)으로 신고하거나 식품을 조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의 적용도 받지 않음

- 또한 상업시설에 설치되지 않고 주거지역 등 비상업지역에 설치된 유원시설은 「관광진흥법」의 유원시설업에도 해당되지 않음

※ 유원시설은 건축법상 "위락시설"(「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해당되며, 건축법상 위락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제1항)에 따라 상업지역에만 설치가 가능

○ 검사 비대상 유기기구가 존재

- 안행부가 관리해온 어린이놀이기구는 생산 시 안전인증, 설치 시 설치검사, 2년 정기검사를 하는 것에 비해 안전성검사 비대상유기기구는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과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키즈카페와 같은 신종 어린이놀이시설들은 다음의 용도지역에 소재할 수 있음

<표 38> 신종 어린이놀이공간의 입지가능지역

구분	전용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1종,2종,3종)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 일반)	근린상업 지역
건축법에 따른 허용	제1종근린생활시설 (식품점 300㎡ 미만)	제1종근린생활시설 (식품점 300㎡ 미만)	제1종근린생활시설 (식품점 300㎡ 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식품 300㎡ 이상 소규모운동시설 500㎡ 미만), 운동시설 (500㎡ 이상)	제1종근린생활시설 (식품점 300㎡ 미만), 제2종근린생활시설 (식품 300㎡ 이상 소규모운동시설 500㎡ 미만), 위락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시군조례에 따른 추가 허용		제2종근린생활시설 (식품 300㎡ 이상 소규모운동시설 500㎡ 미만), 운동시설 (500㎡ 이상)	-	운동시설(500㎡ 이상)	위락시설

제5장
어린이놀이공간의 법령 개정방향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법률 개정안

제 5 장 어린이놀이공간의 법령 개정방향

제1절 기본방향

☐ 사각지대의 해소

○ 부처별 안전규제가 다양하게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놀이공간과 관련해서는 중복규제보다는 안전관리가 진행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향이 존재

○ 부처별 역할분담을 통한 어린이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규제가 모든 지역에서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와 안전행정부의 담당 영역을 명확히 구분

☐ 기존 안전규제와의 형평성 유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과 신종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규제가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개정을 통하여 신종 어린이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규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개정안의 안전규제 내용과 기존 「관광진흥법」상 기타유원시설업에 대한 안전규제 내용이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포함시키도록 해야 함

☐ 안전규제 법규의 난립 방지를 위해 기존 법률 개정

○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이미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 놀이시설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 식품위생 관련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등
- 환경 관련하여 「환경보건법」 등

○ 신규 법률을 제정할 경우 기존 법률과의 충돌, 난립이 예상되므로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재정비하여 시민과 사업주의 규제에 따른 마찰비용을 감소시키도록 함

제2절 법률 개정안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목적

○ (현행) 시설 안전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

○ (개정)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을 강조하고 행정기관의 역할 분담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삭제

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 범위의 확대

○ (현행) 현재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동력기구인 어린이놀이기구 11개종만 포함되어 있음

○ (개정) 어린이놀이기구의 종류를 시행령에 규정토록 법에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현행「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외에「관광진흥법」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유기기구를 포함토록 함

법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어린이에게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개정안(신설)
제2조의 1(어린이놀이기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어린이놀이기구 【별표 1】 예시 1.「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 2.「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기구 3. 그 밖에 어린이의 놀이를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어린이놀이제공영업의 신규 도입

○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신종 어린이놀이공간에 대한 관리대책이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놀이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규정할 수 있다고 위임만 해놓은 상태임

○ (개정) 「관광진흥법」의 기타유원시설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상에서 "어린이놀이제공영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체 형태를 정의하고 관리대책을 포함시켜야 함

- 어린이놀이제공영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
- 어린이놀이제공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의 법체계와 유사하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을 고려
- 마찬가지로 놀이제공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기준도 안행부령으로 규정하고 신고토록 규정(변경·폐업 신고, 영업의 승계 등 규정)

○ 관광진흥법

- 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한다)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①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유원시설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린이놀이제공영업의 정의 및 신고제 도입

○ (현행) 신종 어린이놀이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체계 부재

○ (개정) 신종 어린이놀이공간에 대한 관리감독을 원활히 하고 사업체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 유형을 도입하고 「관광진흥법」의 기타유원시설업과 동일하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를 적용

- 어린이놀이제공영업은 모든 종류의 놀이기구를 포함하고 주거지역에서도 영업활동이 가능
- 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과 어린이놀이제공영업 간의 차이를 확실히 함으로써 유원시설업의 영업영역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제공영업에 대한 법적 정의에 “어린이”를 대상으로라는 주요 고객층을 명시하도록 함

법률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신 설>	제2조(정의) 4. “어린이놀이제공영업”이라 함은 어린이에게 어린이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용료를 받는 영업을 말한다.
제11조의2(어린이놀이제공영업의 신고) <신 설>	① 어린이놀이제공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놀이제공영업의 신고를 한 자는 놀이제공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어린이놀이제공영업의 승계) <신 설>	① 어린이놀이제공영업자가 그 놀이제공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놀이제공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법률	
현행	개정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놀이제공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놀이제공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놀이제공영업자가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 또는 시설·운영의 개선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놀이제공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놀이제공영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놀이제공영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놀이제공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조(영업자의 신고) <신 설>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제공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어린이놀이제공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조 관련) 1. 어린이놀이제공영업소는 어린이놀이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됨 2. 조명은 6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할 것.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 3.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이용요금표·준수사항 및 이용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할 것 4. 사업장의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명시하고 초과입장시켜서는 안 되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며 어린이기구별 정원도 명시할 것 5.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6.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할 것 7.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할 것 8. 업소 내에 방충시설, 쥐막이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 9. 어린이 등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구조 및 넓이일 것 10.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획되어야 할 것 11. 실외 건축물일 경우에는 소음저감장치, 방진장치 등을 구비하여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한 인근 건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 ② 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린이 놀이제공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놀이제공영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로 놀이제공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놀이제공영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놀이제공영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신고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신고증 재발급신청서(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중요사항의 변경신고) <신 설>	① 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2. 어린이놀이기구 수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3.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② 법 제11조의2조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놀이제공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 2.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4. 어린이놀이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 관련 서류 5. 어린이놀이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신 설>	① 법 제11조의4에 따라 놀이제공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의 놀이제공영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신 설>	① 법 제11조의5에 따라 놀이제공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 서식의 놀이제공영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

어린이놀이제공영업 □ 신고서

※□에는 ∨ 표시를 하며, 아래의 허가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 명(대 표 자)		② 생 년 월 일	
	③주 소	(전화번호 :)		
영업소	④대 표 자		⑤ 생 년 월 일	
	⑥소 재 지	(전화번호 :)		
	⑦명 칭 (상 호)			
	⑧대지면적		⑨바닥면적	
어린이놀이기구종 수	⑩ 안 전 인 증 대 상 공 산 품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종	⑫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
	⑪유기기구(「관광진흥법」)	종	⑬영업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구비서류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 허가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담당부서
수 수 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	3일
유 의 사 항	1.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의 불이익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3조의3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3조의4조에 따른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제31조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별지 제21호]

어린이놀이제공영업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에는 ∨ 표시를 하며, 아래의 허가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신고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		
영업소	④명 칭(상 호)		⑤ 신고번호	
	⑥ 소재지	(전화:)		
변경내용	⑦변경 전			
	⑧변경 후			
	⑨변 경 일 자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증 1부 2.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포함) 3.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어린이놀이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에 따른 설치검사 관련 서류 1부 5. 어린이놀이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신고 안내

제출하는곳	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부서	00담당부서
수 수 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	7일
유 의 사 항	1. 변경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 나. 어린이놀이기구 수 또는 영업장면적의 변경 다.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2. 신청(신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허가취소 등) 나.「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

허가등록번호 ()

어린이놀이제공영업 □ 신 고 증

※ □에는 ∨ 표시를 합니다.

1. 영 업 소 명 칭	
2. 소 재 지	
3. 영 업 의 종 류	
4. 대 표 자 성 명	
5. 대 표 자 의 생 년 월 일	
6.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어린이놀이기구 수(종수)	
7. 유기기구 수(종수)	
9. 영 업 기 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신고번호:		
변경 및 처분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인]

[별지 제23호]

어린이놀이제공영업 관리대장

<table>
<tr><td colspan="5">1. 신고사항</td><td colspan="5">4. 행정처분사항</td></tr>
<tr><td colspan="2">업 소 명
(상 호)</td><td colspan="3"></td><td>처 분
연월일</td><td>문 서
번 호</td><td>위 반
사 항</td><td>처분 내용 및
기간</td><td>기 재 자
성 명</td></tr>
<tr><td colspan="2">신고번호</td><td></td><td>신 고
일 자</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소 재 지</td><td colspan="3">(전화번호:)</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대
표
자</td><td>성 명</td><td></td><td>생 년
월 일</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화번호:)</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5">2. 업소규모</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대 지 면 적</td><td></td><td>건물연면적</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건물소유구분</td><td colspan="3">자가, 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사 용 층 수</td><td colspan="3">지상()층, 지하()층 중
지상()층, 지하()층</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어린이
놀이기구 종수</td><td colspan="2">안전인증대상공산품
어린이놀이기구 수
(종수)</td><td>종</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유기기구 수(종수)</td><td>종</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5">3. 신고사항 변경사항</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연월일</td><td colspan="2">내 용</td><td>기재자 성명</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

어린이놀이제공영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서

0. 신 고 번 호	
1. 영 업 소 명 칭	
2. 소 재 지	
3. 영 업 의 종 류	
4. 대 표 자 성 명	
5. 대 표 자 의 생 년 월 일	
6.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어린이놀이기구 수 (종수)	
7. 유기기구 수(종수)	
9. 영 업 기 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신고증을 재교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 전 행 정 부 장 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5호]

어린이놀이제공영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5일	
양도인(피합병인)	① 성 명(대표자)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양수인(합병인)	④ 성 명(대표자)		⑤ 생년월일	
	⑥ 주 소			
⑦ 양도인(피합병인)의 상호·등록번호				
⑧ 업 종				
⑨ 주영업장의 소재지		(전화:)		
⑩ 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⑪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⑫ 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1조의3에 따라 어린이놀이제공영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안전행정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20,0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

어린이놀이제공영업 휴업(폐업)통보서				처리기간 1 일
신고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④ 등록번호			⑤ 업 종	
⑥ 상 호(명 칭)				
⑦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⑧ 휴업(폐업) 사유				
⑨ 휴업(폐업) 연월일				
⑩ 휴업(폐업) 범위				
⑪ 휴업기간 (휴업인 경우)				

「어린이놀이시설법 안전관리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제공영업의 휴업(폐업)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전행정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어린이놀이제공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시 제재

○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설치검사, 안전점검, 보험가입,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의무를 부과(위반시 과태료 처분)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에서는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개선명령 및 폐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검사 미실시 및 검사 불합격시설 이용(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점검 미실시 (500만원), 안전교육 미이수 (200만원), 보험 미가입(200만원), 점검결과 기록·보관(200만원), 중대사고보고(200만원), 보고·검사·답변(300만원)
- 「관광진흥법」: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에서는 안전관리자 상시배치하고 기타유원시설업은 배치의무 없음, 일일점검, 운행전 안전상태 확인, 매주 1회 종사자 교육 등 (종합·일반·기타)

○ (개정) 현행 일반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무 이외에 놀이제공영업자에게 영업신고, 관리자 배치 등 안전관리의무 추가 부과

-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개선명령, 과태료 등 제재사항, 과징금 대체, 청문절차에 관한사항 등 규정

법률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어린이놀이제공영업의 준수사항) <신 설>	① 어린이놀이제공영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3조의2(어린이놀이제공영업의 영업 정지 및 개선명령 <신 설>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제공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3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법 제11조의2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3. 법 제11조의4에 따른 기한 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현행	개정안
	4.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제공업을 신고한 경우 5.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11조의3 및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업폐쇄 또는 영업정지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어린이놀이제공영업소의 폐쇄조치 등) <신 설>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 제2호에 따라 게시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그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의4(과징금의 부과) <신 설>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놀이제공영업자가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영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현행	개정안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청문)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청문)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3.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제공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31조(과태료) ① 생략 1. ~ 4. (생 략) <신 설> 5. ~ 7. (생 략) ②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1. ~ 4. (현행과 같음)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시행령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등) (신설)	법 제23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18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23조의4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령 [별표 10]

행정처분의 기준(제18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따르며, 두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1조의3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23조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법 제11조의2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법 제23조의2/ 법 제23조의3	시정명령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영업소 폐쇄명령

3. 법 제11조의4에 따른 기한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4.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제공업을 신고한 경우	법23조의2/ 법 제23조의3	시정명령	시정명령	영업소 폐쇄명령	※한선교의원에 대한 안행부 의견: 영업폐쇄 반대
5.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23조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6. 법 제11조의3 및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법23조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시행령 [별표 11]

위반행위별 과징금부과기준(제18조의3 관련)

위반사항	부과액(단위: 만원)
1. 법 제11조의3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800
2. 법 제11조의2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00
3. 법 제11조의4에 따른 기한 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0
4.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제공업을 신고한 경우	800
5.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00 (단 안전관리자는 1600, 관광진흥법상 일반유원시설업 준용)
6. 법 제11조의3 및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800 (관광진흥법상 일반여행업 준용)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신 설>	법 제11조의3에 따른 어린이놀이제공영업의 준수사항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어린이놀이제공영업의 준수사항(제○○조 관련) 1. 어린이놀이제공영업자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가. 본인 스스로 또는 운행자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나. 안전점검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 시판을 게시할 것 2. 어린이놀이제공영업자 및 종사자는 아동성추행, 성추행, 성폭력 등의

	범죄에 관여했던 적이 없어야 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3. 어린이놀이제공영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해야 함 가. 사업장 내에서 과도한 음주 등으로 소란이나 아동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음주판매 및 이용을 제한하도록 함 나. 어린이놀이기구의 신장제한, 속도제한 등과 해당되는 어린이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하여야 함

4. 어린이놀이제공영업자에 대한 소급적용

○ (현행) 법 제정 시 법 시행(2008.1.27) 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4년간 설치검사 유예 (2011.8.4 법률개정하여 3년 연장)

○ (개정) 이 법 개정 전 설치되어 영업 중인 어린이놀이제공영업소에 대하여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 신고, 4년 이내 설치검사 의무 부과

현행	개정안
<부칙 신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 전 어린이놀이제공영업의 설치검사) ① 이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되어 어린이놀이제공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제공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제공영업자로 신고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어린이놀이제공영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5. 타 법률과의 관계

○ 어린이놀이제공영업자의 준수사항 중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놀이제공영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포함

○ 영업자 준수사항 중에서 종사자 요건과 환경요건은 다른 관련 법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해당 관련법은 다음과 같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환경보건법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법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할 것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2.「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략)

1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중략)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 등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 등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

○ 환경보건법

-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중략)

④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중략)

 10의2.「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

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참고문헌

김윤영, 2009,「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시스템 개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관광부, 2008,「유원시설업 사업주 안전교육」.

문화관광체육부, 2011,「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자료」.

문화관광체육부, 2013,「유원시설 업무편람」.

보건복지부, 2006,「어린이놀이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소비자원, 2013,「트램펄린 시설 안전실태조사」.

윤선화·정윤경, 2011,「실외놀이터와 어린이안전」, 한국생활안전연합.

한국생활안전연합, 2012,「키즈카페 안전관리 강화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현실화 연구」.

Association of Play Industries (www.api-play.org)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www.cpsc.gov)

International Playground Safety Institute (www.internationalplaygroundsafetyinstitute.com)

National Recreation and Park Association (www.nrpa.org)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www.rospa.com)

Townswomen's Guild (www.townswomen.org.uk)